

감통원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던 공동구 중 당시 서울시에 있는 6개와 대전광역시 춘천
공동구 등 총 7개를 구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이관한 이후부터 이원적으로
지도·감독해오던 것을 2014. 2. 5.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제 목 이원화된 공동구 제난 지도·감독체계 통합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안전처와 국토부는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3」의 규정에 따른 제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각각 세종특별
자치시 공동구 등 19개 공동구¹⁾ 및 대전광역시 춘천 공동구 등 7개 공동구²⁾의 제
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
도·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처,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의 해결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26개 공동구를 안전처와 국토부가 각각 소관을 나누어 지도·감독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2000년 2월경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 이후 구
상충하는 갈등의 해결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상에는 관할 공동구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세종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인천광역시 연수 등 4개·광주광역시 서구·대전·경기도 평촌 등 8개·경기·전남·전북·
충남·충북·오창 등 총 19개가 안전처 소관임

1)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상에는 관할 공동구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세종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인천광역시 연수 등 4개·광주광역시 서구·대전·경기도 평촌 등 8개·경기·전남·전북·
충남·충북·오창 등 총 19개가 안전처 소관임

2) 대전광역시 춘천 및 서울시 여의도·복동·기락·개포·상계 등 6개 총 7개가 국토부 소관임

공동구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 관할 첨용물인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가스관 등의 단전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해치고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반면, 공동구별 지도·감독체계가 다른 경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고, 공동구를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에서도 지도·감독하는 제난관리주관기관을 한 부처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전처³⁾와 국토부는 공동구의 제난관리주관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표 39」와 같은 이유로 안전처는 소관 공동구를 국토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토부는 반대로 안전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서로 말지 않으려 하고 있다.⁴⁾

【표 39】 두 부처 간 공동구 일원화에 대한 의견

안전처 의견	국토부 의견
공동구에 대한 각종 법령·지침 등은 국토부가 제정·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안전처가 공동구 재난위험도 처리하는 것은 태동부지 않아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함	공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시설을 이므로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지원·감독 등을 위해 재난 전문기관인 안전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지휘·감독하는 현장주체부로 일원화해야 함

자료: 안전처 및 국토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상에는 관할 공동구 명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세종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인천광역시 연수 등 4개·광주광역시 서구·대전·경기도 평촌 등 8개·경기·전남·전북·
충남·충북·오창 등 총 19개가 안전처 소관임

3) 안전처 내에서도 공동구 재난에 예방 관리 업무는 특수재난실이 대용 관리 업무는 재난관리실이 담당하고 있음
4) 2015. 5. 11. 안전처가 공동구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관은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국토부는 안전처로 일원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개정이 중단됨

그 결과 공동구를 직접 유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처와 국토부에 각각 공동구 재난 관리 방호나 훈련, 각종 협의·교육 참석, 각종 실적 제출 등의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지 않는 공동구에 대해서는 안전처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전처는 공동구 재난과 같이 전국적인 재난이 아닌 지역 재난에 대해서 직접 수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부가 재난관리주관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⁵⁾하면서 2013년 원공되어 현재 사용 중인 은평 공동구를 소관에서 제외하여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인 마곡1·2 공동구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 없이 운영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44조⁶⁾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이를 지도·감독할 부처는 서로 말지 않으려 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 없이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처 간의 정체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국무조정실도 이와 같이 두 부처가 공동구 재난에 대한 주관기관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등 관찰

다툼을 하고 있는데도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일원화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안전처와 국토부는 공동구 관리의 일원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각각 공동구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운용하고 있는 국토부로, 재난 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안전처로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안전처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일원화하도록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활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업무 혼선과 관리 사각이 발생하고 있는 공동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일원화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5) 안전처는 국토부가 서울 및 대전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범 국가 차원의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동구 재난은 지역적 재난일 뿐 아니라 범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도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처)로 구성되는 것과 부합되므로 은평 공동구 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구도 국토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반대로 국토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77개 공동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구는 안전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운영 공동구는 재난관리주관기관 없이 운영 중임

6) 2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농지·밭지구 등의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